

(앞 쪽)

제 호
검 사 원 증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">사 진 3cm × 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</div>
성 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60mm × 90mm [보존용지(1종) 120g/m²]

(색상: 연노랑)

(뒤 쪽)

검 사 원 증
소속/직급: 성 명: 생년월일:
위 사람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.
년 월 일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직인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